5. 심판회부



지정재판부가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면서 정한 보정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정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기간에서 제외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심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지정재판부의 위 사전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10. 29. 93헌 마222, 판례집 5-2, 372, 375).